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78 발의연월일: 2024. 10. 14.

발 의 자:조지연·김은혜・박충권

김성원 · 권영진 · 우재준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신성범

엄태영 · 김형동 · 고동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㈜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. 해당 사업장은 '21년 2월부터 '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.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. 정부도 「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」(8.13)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

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,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'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'만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㈜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(안 제15조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9항 중 "제8항제1호"를 "제8항제1호 및 제2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8항제2호 및 제3호"를 "제8항제3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료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 다.

제3조(보험료율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① ~ ⑧	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① ~ ⑧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⑨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	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		
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			
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			
취소하고, 산재예방요율을 적용			
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			
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			
다.	.		
⑩ 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	⑩ <u>제8항제3호</u>		
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			
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			
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			
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			
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			
율을 산정한다.			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		